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ABL인터넷정기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0년, 20년, 60세, 70세, 80세만기	10년, 20년납, 전기납	만 19세 ~ 50세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기타

가. 전환 특전

(1)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전환 후 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각각 이 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와 동일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다.

① 피보험자의 장애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② 보험기간 만료 전 2년 이내인 경우

③ 전환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전환 후 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3)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4) ‘(1)’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회사는 전환 전 계약의 전환 당시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전환시점부터 계약자는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한다.

나.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을 제외하며 온라인채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제외한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마.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 (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